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517
----------	-------

발의연월일 : 2024. 2. 15.

발 의 자 : 윤두현 · 정희용 · 서일준
지성호 · 최춘식 · 류성걸
金炳旭 · 강대식 · 박대출
정경희 · 윤주경 · 조수진
박 진 · 김은희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으나 이용자 간 정보 격차와 과도한 경쟁 문제 등이 해소되고 있지 않아 해당 법률의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더라도 해당 법률의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별도로 규정하여 법 폐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50조 제1항제8호의2·제8호의3, 제95조제4호의2 및 제104조제5항제5호의2 신설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①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분실·도난 단말장치”라 한다)를 해외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해외수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가 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를 “자(전기통신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위탁점을 포함한다)가 제1항제5호·제5호의2·제8호의2 및 제8호의3”으로 한다.

8의2. 이용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약관과 별도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부당하게 특정한 부가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

8의3.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제9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분실·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자

제104조제5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

제3조(시정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징금·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3조의2(분실·도난 단말장치</u> <u>의 수출 방지) ① 누구든지 분</u> <u>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u> <u>「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u> <u>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u> <u>업자 등에게 신고된 이동통신</u> <u>단말장치(이하 “분실·도난 단</u> <u>말장치”라 한다)를 해외로 수</u> <u>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출을</u> <u>목적으로 분실·도난 단말장치</u> <u>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u> <u>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u> <u>된다.</u> <u>②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u> <u>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단</u> <u>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u> <u>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u> <u>그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u> <u>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u> <u>이 정하여 고시한다.</u> <u>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u> <u>제2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u> <u>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8. (생략)

<신 설>

바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
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해외수
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illegible]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이용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
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할 때 이용약관과 별도로 이
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신 설>

9. ~ 11. (생 략)

②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과 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

지원하는 조건으로 부당하게
특정한 부가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
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
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
는 행위

8의3.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
을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
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하
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
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행
위

9. ~ 11. (현행과 같음)

② -----

-----자(전기통신
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전기통
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위
탁점을 포함한다)가 제1항제5
호·제5호의2·제8호의2 및 제
8호의3-----. ----

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신설>

5. ~ 8. (생략)

제104조(과태료)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③ (현행과 같음)

제95조(벌칙)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분실·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자

5. ~ 8. (현행과 같음)

제104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 5. (생략) <u><신설></u>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u>
6. ~ 17. (생략) ⑥ (생략)	6. ~ 17.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